

가평군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자녀 할인 정책 변경 안내

※ 「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 조례 개정에 따라
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)으로
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며 2023년 11월 1일 예약건 부터 적용되오니
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례 일부개정 전

제11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

2.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

나. 「가평군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,
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<개정 2021.9.29.>

조례 일부개정 후

제11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

2.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

나. 「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, 18세 미만 두 자녀
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<개정 2021.9.29.> <개정 2023.9.13.>

※ 「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 “다자녀가정”이란 **군에 주민등록을 두고**
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
말한다. <신설 2023.9.13.>